

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65
----------	------

2013년 7월 12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6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18일
- 다. 상정결과 :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3년 7월 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국장 강종필)

가. 제안이유

-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를 통하여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,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 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).
-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(안 제6조).
-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둠(부칙 제3조).

4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윤 병 국)

가.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검토

- 본 개정안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 - ※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 규정인 현행 제4조(수입증지의 판매 등), 제5조(수입증지판매수수료), 제6조(감독 등), 제7조(수입증지영수증 발행), 제8조(수입증지의 소인) 등을 삭제하고, 요금계기와 신용카드 등 영수증 원본 첨부를 통한 수수료 납부 확인 등의 인증,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(안 제3조제2항, 안 제4조, 안 제5조),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청구는 가능(안 제6조)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 전산민원접수대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방세, 사용료, 각종 수수료 등을 현금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표이나, 그동안 위·변조가 용이하며 재사용 문제 등 공무원의 부패 발생뿐만 아니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으로 행정비효율성을 야기하고, 구매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여 왔음.

▶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의 정의

-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. 예)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, 옥외광고물신고·허가
-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. 예) 국가시험수수료, 계약서 작성
- ☞ “수입인지”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, “수입증지”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,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
- ☞ 조세인 “인지세”는 17세기 초, 네델란드에서 기원하여 영국,프랑스,미국,독일,일본등 도입·시행 우리나라는 1919년 도입하여 1979년에 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”이 제정·시행되고 있음.

- 행정안전부는 “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 증지 사용 폐지 방안”(2011. 7)을 통보한 바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입증지의 재사용 가능성 등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,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하고, 증지의 전자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권고(2011. 8. 22)한 바 있음.

〈 종이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 장단점 〉

구분	장 점	단 점
종이수입증지	- 다량구매 보관 용이	- 제조비용 증가 - 위·변조 - 재사용 등 부조리 상존 - 고액수수료 민원사무 다량의 종이증지 첨부 - 소인날인 수작업 처리 - 구매 접근성 저하 등
전자수입증지 (인증기, 카드, 인터넷 등)	- 무방문 납부 가능 - 소인 날인 불필요 - 현금, 신용카드, 교통카드, 인터넷 등 납부방법 다양 -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신청 가능 - 정산관리 용이 등	- 필요시마다 구매

- 이에 집행부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(인증기) 확충, 카드단말기 보급, e-tax시스템 수수료 수납체계 구축 등 종이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,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기본으로 하 되, 수입증지요금계기(인증기)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의 기존 종이증지가 지닌 기능(영수기능·수수료 횡령 방지 기능 등)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추진 경과 〉

- 2011. 3.11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(재무과101701)
 - 단계별 폐지 추진(1단계 시본청 '11.6.1, 2단계 사업소, 자치구 등 '11.9.1)
- 2011. 4.13 다산플라자 설치용 인증기 등 구매(재무과106817)
- 2011. 7.28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 통보(행안부 민원제도과2231)
- 2011. 9. 1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재안내 및 협조요청(재무과125238)
- 2011. 9. 5 서울시 종이수입증지 폐지관련 보완개선계획(재무과125767)
 - 자치구(25개), 사업소(8개) 등 카드단말기 설치
- 2011.11.15 서울시 종이수입증지 폐지관련 보완개선계획(재무과135921)
 - 경찰서(31개) 카드단말기 설치
 - e-tax시스템 수수료 수납 구축운영
- 2012. 5. 1 수입증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(재무과19451)
- 2013. 2.28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계획(재무과10614)
- 2013. 5. 3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

나. 세부 조문별 검토

1)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)의 <u>발행 및 관리</u>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<u>관리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수입증지의 <u>발행</u> 및 관리)_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<u>발행하고 관리</u> 한다. ② <u>시장</u> 은 수입증지의 <u>관리총괄</u> 을 위하여 수입증지 <u>취급</u> 공무원을 둔다. ③ <u>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모양</u> 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수입증지의 <u>관리</u>)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<u>관리</u> 한다. ② <u>시장</u> 은 수입증지의 <u>관리총괄</u> 을 위하여 수입증지 <u>관리</u> 공무원을 둔다. ③<삭 제>

○ 개정안은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발행에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,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수입증지 관리공무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축소된 역할을 반영하였음.

※ 판매와 관련된 제4조(수입증지의 판매 등), 제5조(수입증지판매수수료), 제6조(감독 등), 제7조(수입증지영수증 발행), 제8조(수입증지의 소인)도 삭제되는 개정안임.

○ 수입증지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제조·보관하고 있는 약 221만매는 사실상 폐기 처분될 것으로 보임.

※ 종이 수입증지 잔고현황

- 18종 (10원권~10,000원권), 시금고 보관, 잔고 2,210,663매 3,895,607천원

▶ 종이수입증지 연도별 제조현황

(단위 : 매 원)

구분	권종	제조단가	제조수량	제조금액
2008년	200원권	34.07	15,000	9,467,050
	10,000원권	44.78	200,000	
2009년	200원권	42.59	10,000	11,173,900
	10,000원권	53.74	200,000	
2010년	10,000원권	61.99	100,000	6,199,000

※ 2011년 증지 제조단가 : 고액권(1,000원권 이상) 65.18원, 저액권(1,000원권 미만) 189.93원

▶ 종이수입증지 판매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8			2009			2010			2011.8월		
	계	전자	종이	계	전자	종이	계	전자	종이	계	전자	종이
판매금액	3,671	743	2,928	3,758	1,863	1,895	3,340	2,271	1,069	1,852	1,576	276
비율(%)	100	20.2	79.8	100	49.6	50.4	100	68	32	100	85	15

※ 전자 : 인증기, 신용카드

○ 종이수입증지 폐지방침이 카드단말기, 인증기, 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 등 대체수단의 확보라는 물적 기반 구축으로 효율성 증대 및 부조리 사전차단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'판매' 관련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음.

- 그러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행정방침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수입증지 판매와 사용을 중단함에 따라 수입증지(보관 수입증지: 221만매) 제조비용이 사장(死藏)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.
- 2011년 8월까지의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보여주는 판매 현황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 및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한 조치로 인해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.

2) 수입증지요금계기 등 납부(안 제3조 및 제4조,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입증지에 의한 납부)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<u>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</u>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의2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입증지 요금 2. 발행기관명 3. 계기 고유번호</p> <p>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)</p> <p>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<u>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</u>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"수입증지"라 한다)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.</p> <p>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입증지 요금 2. 기관명 3. 계기 고유번호</p> <p>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,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

- 개정안은 폐지되는 수입증지를 삭제하고 대체납부방식인 수입증지요금 계기(이하 '계기'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계기 업무처리를 규정한 제3조의2의 내용을 개정안 제3조에 담았음.
-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수동인증기를 의미하는 바,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.

<수동 인증기의 개념>



인증기 모습

수동 인증기 날인 후

- 종이증지 기능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점*은 보완한 형태
* 구입불편, 재사용 등으로 인한 현금 유용 문제 등
- 서류를 수동 인증기에 넣고 도장을 찍듯 사용, 수수료 금액·발행일 등 표시

<주요 기능>

- ① (영수 기능) 해당 민원의 수수료 금액을 표시, 민원인에게 신뢰성 부여
- ② (정산 기능) 인증기 사용금액 누계를 통해 수수료 정산, 공무원의 전산 민원처리 시스템 오기시 인증기 기록과 대조를 통해 오류 정정

- 개정안 제4조와 제5조는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술적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.

3) 종이수입증지 납부(안 제3조 및 제4조,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입증지의 교환) ①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·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를 청구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6조(종이수입증지의 환매)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

- 개정안은 안 제3조에 따라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는 폐지되었으므로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은 삭제하고 기존에 판매된 수입증지 환매 조항은 존치하였음.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환매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 이는 매각된 수입증지를 납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매입자에 대해 수입증지 제작 실비 및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액면금액의 100분의 5를 환매신청자에게 전가(轉嫁)한 것이라고 하겠음.
- 하지만 금번 개정안의 경우는 수입증지의 납부방법이 폐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환매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정책변경으로 인해 파생된 비용을 환매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며, 환매신청자의 수입증지 미사용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매가격을 액면금액 전액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,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)의 발행 및 관리”를 “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입증지의 관리)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한다.

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 한다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“수입증지”라 한다)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

한다.

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수입증지 요금
2. 기관명
3. 계기 고유번호

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,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,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계기관리책임공무원) 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입금의 납입)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이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종이수입증지의 환매)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변상책임)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를 제8조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정보통신망”을 “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시 수입증지”를 “시 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

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요금계기, 신용카드”로 한다.

제3조(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

부 서 명 :
 당 당 자 :
 기기 번호 :
 증지 발행일 :
 정산 날짜 : 년 월 일

결 재			

전일 누계 금액							
번호	발급서류명	수수료	발행매수	결손매수	발행금액	결손금액	차감금액
합계금액(일계)							
월누계금액							
년누계금액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수입증지 환매청구서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성명			
주소			
사유			
환매금액		액면금액	
내역			
종별	수량	액면금액	환매금액
환불 은행, 계좌번호 :			
전화번호 :			

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인 또는 서명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)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2조(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)</u> <u>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발행하고 관리한다.</u> <u>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둔다.</u> <u>③ 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제2조(수입증지의 관리)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한다.</u> <u>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둔다.</u> <u>③<삭 제></u></p>
<p><u>제3조(수입증지에 의한 납부)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</u> 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조(수입증지요금제기 등에 의한 납부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제기(이하 "제기"라 한다)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2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"계기"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증지 요금 2. 발행기관명 3. 계기 고유번호 <p>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</p>	<p>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"수입증지"라 한다)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.</p> <p>③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입증지 요금 2. 기관명 3. 계기 고유번호 <p>④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기관명,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〈삭제〉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수입증지의 판매 등) ① 수입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(이하 "판매인"이라 한다)이 판매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판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판매인의 요건, 의무, 계약절차,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5조(수입증지판매수수료) ①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 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 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. 다만,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6조(감독 등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관련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
<p><u>제7조(수입증지영수증 발행)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<p><u>제8조(수입증지의 소인)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,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소인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<p>〈신 설〉</p>	<p><u>제4조(계기관리책임공무원) 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<u>제9조(수입증지의 교환) ①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·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변상책임) 수입증지를 출</u></p>	<p><u>제5조(수입금의 납입)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고,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이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6조(종이수입증지의 환매)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제7조(변상책임) 수입증지관리공무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09 293 778 568"> <u>납·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/p> <p data-bbox="172 645 539 685"> <u>제11조(규칙) (생략)</u> </p>	<p data-bbox="842 293 1434 510"> <u>원 및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/p> <p data-bbox="805 645 1390 685"> <u>제8조(규칙)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u> </p>